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31

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: 강선우·추미애·정태호

박해철 · 김윤덕 · 김 윤

서미화 • 한병도 • 전현희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8항 중 "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"을 "교육비"로 한다.

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3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 1조제1항·제2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품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
- 2.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
- 3.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
-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식품위생교육기관"이라 한다)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의4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4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
 - 4. 그 밖에 총리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81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4.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식품위생교육) ① ~ ⑦	제41조(식품위생교육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	8
육의 내용, <u>교육비 및 교육 실</u>	
<u>시 기관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	
사항은 총리렁으로 정한다.	
<u><신 설></u>	제41조의3(식품위생교육기관의
	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
	<u>장은 제41조제1항·제2항 및</u>
	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
	생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
	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자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
	로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의
	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	1.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
	2.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
	<u> 품산업협회</u>
	3.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
	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
	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
	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
	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

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 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식품위생교육기관"이라 한다) 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위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<u>제41조의4(식품위생교육기관의</u> <u>지정 취소 등)</u> ① 식품의약품

<신 설>

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4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 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<u>경</u>우
- 4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다.

제81조(청문) 식품의약품안전처 제81조(청문)-----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
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~ 1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 ~ 4. (생략)

 	-	 	_	 _	 	_	 	_	$\overline{}$	$\overline{}$	_	_	_	
 		 	_	 _	 									
				_	 		 	_	_	_	_	_	_	
							 	_	_	_	_	_	_	
							 	_	_	_	_	_	_	
							 _	_	_	_	_	_	_	
								_	_	_	_	_	_	
								_	_	_	_	_	_	

-----.
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1의4.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
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
소

2. ~ 4. (현행과 같음)